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의 건

□ 제안 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부칙(개정·시행, 2023. 12.14.) 제2조는, 동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 2024년 1월부터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, 2024. 2. 15.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통보함에 따라, 이를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로 정하기 위하여,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54조의2(조례안의 상정시기)에 의거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,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(안)대로 2월20일(화)에 상정하고자 함.

□ 대상 조례안

-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- 접수일자 : 2024년 2월 15일(목)
- 회부일자 : 2024년 2월 16일(금)

□ 관련근거

-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54조의2
 - 제54조의2(조례안의 상정시기)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,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붙임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(안) 1부.

제3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(안)

구 분	일시/장소	상 정 안 건(안)
제322회 임시회 제1차 회 의	2.20.(화) 12:40 운영위원회 회의실	1.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의 건 2.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